

대전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1나10756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판기

피고, 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한

변 론 종 결 2021. 12. 3.

판 결 선 고 2022. 1. 28.

제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4. 7. 선고 2020가단116781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C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과 주식회사 D 사이에 체결된 2017. 5. 16.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및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경 시공사인 주식회사 D(이하 '채무자 회사')으로부터 대전 서구 E 지상 F병원 개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중 장례식장 마감공사를 공사금액 2억 490만 원(애초의 1억 6,016만 원에서 증액되었다)에 하도급받은 업체로서 2010. 11.경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건축주인 F병원이 부도 처리됨에 따라 채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위 공사대금에 관하여, 원고는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9494호로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10. 10.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사는 원고에게 126,687,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원고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나. F병원 건축주가 부도 처리되자 채무자 회사는 2012. 4.경 원고 등 하수급업체들로부터 F병원의 유치권 행사를 위임받아 공사대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이를 분배하기로 약정한 후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대전고등법원 2014나14618호 건물인도 청구 사건에서, 채무자 회사를 포함한 유치권자들과 F병원 부지 및 건물의 낙찰자인 H(조정참가인) 사이에 유치권에 기하여 채무자 회사 등이 H에게 가지는 채권을 48억 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2016. 9. 19. 성립되었다.

다. 피고들은 채무자 회사 대표이사인 I의 아들, 딸이다.

라. H은 위 조정에 따라서 채무자 회사에 일부 돈을 공탁하고 수표를 지급하였고, 이를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I은 원고 대표자 등으로부터 횡령죄로 고소당하자, 2017. 5. 16. 자녀들인 피고들 명의의 각 새마을금고 계좌(피고 B 명의 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 피고 C 명의 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각 4,000만 원씩 송금(이하 ‘이 사건 금전송금행위’)하였다.

마.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금전송금행위 당시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다.

바. 위 I은 자신의 자녀인 피고들에게 각 4,000만 원씩 송금한 이 사건 금전송금행위에 관하여, 2020. 8. 20.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1433호 사건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20. 12. 23. I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대전지방법원 2020노2816)되어 2020. 12. 31.경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채무자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금전송금행위로 피고들에게 각 4,000만 원씩을 증여하는 사해행위를 하였고, I과 통모한 피고들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므로, 원고는 위 각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에게 각 4,000만 원씩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금전송금행위 당시 I은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 2억 5,355만 원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채무자 회사로부터 변제받는 과정에서 I의 아들과 딸인 피고들 명의의 통장만을 빌린 것일 뿐, 이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금전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한 일반적 요건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 이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해도, 이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증거만으로는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인 I과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송금액 4,000만 원을 피고 B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 6호증, 을 제2, 5,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I은 위 형사사건의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금전송금행위가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 은행계좌를 I 자신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 B은 1993년 생1) 이고, 이 사건 금전송금행위에 이용된 새마을금고 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는 2017. 5. 16. 개설된 점, ③ I은 피고 B 명의 위 은행계좌를 통하여 채무자 회사의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거나 자신의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이 부친인 I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I이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한 것으로서, 피고 B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4,000만 원은 피고 B이 아니라 I에 대한 채무자 회사의 증여행위로 봄이 타당하다(I은 위 형사사건에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I 자신이 약 3억 원

상당의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들이 제출한 이 사건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전송금행위 당시 I이 채무자 회사에게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본다.

I이 위 형사사건의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금전송금행위가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 은행계좌를 I 자신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을 제2,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은 1995년 생이고, 피고 C 명의 위 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는 2017. 5. 2. 개설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6, 7호증, 을 제2,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 명의 위 은행계좌로 송금된 돈 4,000만 원은 2017. 5. 25. 피고 C 명의로 임차한 임대차목적물(대전 대덕구 J아파트 K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임대인 L에게 송금됨으로써 직접적으로 사용되었는바, 임차인인 피고 C에게 위 돈 4,000만 원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위 J 아파트에 I 뿐만 아니라 피고 C 본인도 전입신고하고 거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I이 위 은행계좌 개설, 송금행위 및 피고 C 명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주도하고 피고 C은 이를 묵인하는 정도에 그쳤다 하더라도, 채무자 회사 대표자인 I과 피고 C 사이에는 이 사건 송금액 4,000만 원을 피고 C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 C에게 이 사건 금전송금행위를 통하여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C의 사해의사도 추정되므로, 피고 C과 채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B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C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효선, 판사 박상준, 판사 신지은

1) 2020. 6. 18.자 주소보정서 첨부 주민등록초본 참고